



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

더 **완화**됩니다

12월부터 신청하세요!

지원대상

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
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
급여별 선정기준 (20년도 / 4인가구기준)

구분	선정기준	구분	선정기준
교육	237만원 (1인기준 : 88만원)	의료	190만원 (1인기준 : 70만원)
주거	214만원 (1인기준 : 79만원)	생계	142만원 (1인기준 : 53만원)

* 선정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상이

신청장소

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*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

2020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

생계급여

-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
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
* 다만,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
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

생계, 주거, 교육급여

- 근로연령층(25~64세) 수급권자의 근로·사업소득의
70%만 소득으로 반영(30%는 공제)

※ 그 외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, 부양비 부과율 인하 등 적용

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?

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

거주하는 지역의 **시·군·구청** 또는 **읍·면·동 주민센터**에 문의

※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'복지로' 홈페이지에서 확인



보건복지부



급여종류

- **급여:**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자활·장제·해산 등 총 7종



| **생계** | 중위소득 30%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(보충급여)



| **의료** | 질병,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(진찰, 치료 등) 제공



| **주거** | 임차료(임차가구), 주택 개량(자가가구) 지원



| **교육** | 학생 수급자의 입학·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



| **해산·장제** | 출산시 1인당 70만원,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



| **자활** |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



보건복지부

www.mohw.go.kr

2020년
1월부터

기초생활보장
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

더 완화됩니다

12월부터 신청하세요!



보건복지부

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
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

더 완화됩니다

12월부터 전국 읍·면·동
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!



지원대상

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
부양의무자 기준*을 충족하는 가구

* 교육급여,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신청장소

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*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

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- 중증장애인 수급권자
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(생계급여)

| 주요내용 |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, 다만 고소득·고재산*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계속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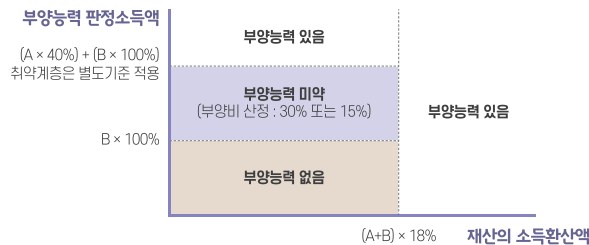
*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합산 9억원 초과인 경우

- 부양비 부과율 인하 (생계급여)

| 주요내용 | 현재 아들·미혼의딸 30%, 결혼한딸 15%인 부양비* 부과율을 동일하게 10%로 완화

*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'부양능력 미약'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, 실제 부양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을 '부양비'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

참고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



* A: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, B: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

** 취약계층은 [(A×40%)+(B×100%)]와 [(A+B)×74%]중 더 높은 기준 적용

선정기준 완화

- 근로연령층(25~64세) **근로소득공제 30% 적용 (생계, 주거, 교육급여)**

| 주요내용 | 근로연령층(25세~64세) 수급권자의 근로·사업소득의 70%만 소득으로 반영(30%는 공제)

* 현재 24세 이하, 65세 이상, 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 근로소득공제 적용 중

- 수급자 **재산기준 완화 (생계, 주거, 교육급여)**

| 주요내용 |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*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** 현행화



구분	기본재산공제액*	주거용재산한도액**
대도시	'19 5400만원 → '20 6900만원	'19 1억원 → '20 1.2억원
중소도시	'19 3400만원 → '20 4200만원	'19 6800만원 → '20 9000만원
농어촌	'19 2900만원 → '20 3500만원	'19 3800만원 → '20 5200만원